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

제정 2020·10· 7 조례 제1629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, 경영의 투명성, 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,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노동자"란 「근로기준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 - 2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이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
 - 나.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」(이하 "「지방출자출연법」"이라 한다)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 된 출자·출연기관
 - 3. "노동이사"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, 사외이사가 아닌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(이하 "비상임이사등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제3조(공공기관 장의 책무)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등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.
 -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,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이천시장은 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
- 제5조(대상기관) 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. 다만. 제2조제2호나목의 기관은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로 한정한다.

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

-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해당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.
- **제6조(임명)** ① 노동이사는 「지방공기업법」,「지방출자출연법」 및 관련 법령과 각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.
 -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
- 제7조(자격) ① 노동이사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고,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.
 - 1. 「지방공기업법」제60조제1항
 - 2. 「지방출자출연법」제10조제1항
 - 3. 「근로기준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
 - 4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및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
 - ④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.
 - 1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
 - 2.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, 선임 또는 위촉된 자
- 제8조(임기)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,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.
- 제9조(권한과 책임) ① 노동이사는 법령,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
- ③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.
- 제10조(제척·회피)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 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- 제11조(수당 등)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.
- 제12조(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) 노동이사제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